

의안번호	제 4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1월 31일 (제317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3년 1월 24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: 2013년 1월 24일
제안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조직신설(TF팀 등)에 따른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일회성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조직이 신설(TF팀 등)되는 경우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확정 위한 규정 신설(안 제3조제3항)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

③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< 신 설 >	③ <u>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.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</u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